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57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이원택

김문수 • 추미애 • 민병덕

장철민 · 김현정 · 최기상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 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 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900만원"을 "1천만원"으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 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1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	
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2.·3. (생략) ④ ~ ① (생략)

<u>1천만원</u>
<u>500만원</u>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